어린이집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어린이집의 종류 및 보육대상부터 보육료,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원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영유아 관리,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복무규정 및 어린이집의 폐지 · 휴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1
1. 어린이집 운영 개관 4
1.1. 보육대상 및 입소자 등 4
1.1.1.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4
1.1.2. 보육의 우선제공 등 4
1.2. 보육료 등 7
1.2.1. 보육료 결정 등 7
1.3. 영유아 보육 7
1.3.1. 보육과정의 운영 등 7
1.3.2.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8
2. 영유아 관리 10
2.1. 영유아 건강 10
2.1.1. 영유아 건강·위생관리 10
2.1.2. 영유아 급식 관리 10
2.2. 영유아 안전 11
2.2.1. 영유아 안전관리 11
2.2.2. 통학차량 안전 관리 13
3. 보육교직원 15
3.1. 어린이집 원장 15
3.1.1.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15
3.1.2.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17
3.2. 보육교사 19
3.2.1. 보육교사의 채용 등 19
3.2.2. 보육교사의 복무관리 21
4.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24
4.1. 어린이집의 휴원 24
4.1.1. 휴원명령 24
4.2. 어린이집의 폐지 등 24
4.2.1.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24

1. 어린이집 운영 개관

1.1. 보육대상 및 입소자 등

1.1.1.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

구분	정의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보육의 우선제공 등

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단서).

1순위(「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68~70쪽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2순위(「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72쪽 참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합니다.
  -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 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및 입소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62쪽 참조)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0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4. 1. 1. ~ 2024. 12. 31.
2세반	2023. 1. 1. ~ 2023. 12. 31.
3세반	2022. 1. 1. ~ 2022. 12. 31.
4세반	2021. 1. 1. ~ 2021. 12. 31.
5세반	2020. 1. 1. ~ 2020. 12. 31.

  - 다만,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명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보육료 등

1.2.1. 보육료 결정 등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결정 및 수납한도액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90쪽 참조).

> ▪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부금 수납의 금지(「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92~94쪽 참조)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료나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내역: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그 밖의 시·도 특성화 비용

※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습니다.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1.3. 영유아 보육

1.3.1. 보육과정의 운영 등

보육과정의 운영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본문).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

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78~80쪽 참조)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1.3.2.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험 등의 가입(「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82~83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가입하고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료 부담
영유아보험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	모든 어린이집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부담 원칙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84쪽 참조).

> ▪ 어린이집에서 갖춰야 하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관리

2.1. 영유아 건강

2.1.1. 영유아 건강·위생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위생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3호다목)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공기관리

▪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먹는물 관리

▪ 어린이집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동물관리

▪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

2.1.2. 영유아 급식 관리

급식관리

영양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106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하며 직접 조리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식위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108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영유아 안전

2.2.1. 영유아 안전관리

안전관리 원칙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114~115쪽 참조)

안전관리 원칙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구분	내용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모든 보육실에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117~119쪽 참조)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이론과 실습 포함 4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120쪽 참조)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부모 동의 및 조사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 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통학차량 안전 관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신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및 관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83쪽 참조)

▪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안전 관리(「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115쪽~117쪽 참조)

▪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 차량운행 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육교직원

3.1. 어린이집 원장

3.1.1.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및 취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⑤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위 9.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위 1. 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봅니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2021년 6월 30일 이후 위의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그 행위를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3항 참조].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위 5.부터 7.까지의 경우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1항 참조].

※ 위 9.의 경우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2항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2항).

▪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3항).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

3.1.2.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등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및 겸임제한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겸임·겸직 제한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겸직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 할 수 있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05~206쪽)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보수교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항·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특별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 ▪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3.2. 보육교사

3.2.1. 보육교사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0조).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그 밖에 보육교직원 임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및 취소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3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영유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2.2. 보육교사의 복무관리

보육교사의 직무 등

보육교사의 직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

보육교사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보수교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며,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급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교육 대상자

▪ 시·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내용 및 시간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① 아동권리의 이해, ②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③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④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

4.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4.1. 어린이집의 휴원

4.1.1. 휴원명령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휴원명령 및 후속조치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의2).

▪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4.2. 어린이집의 폐지 등

4.2.1.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 ▪ **영유아 전원조치**
>
>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신고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휴업·폐업 신고

▪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